부 록 Ⅰ

1. 규제·감독 현황[4)]

■ 금융감독원이 '15년 상반기(1. 1~6. 15) 중 금융회사, 민원인, 금융위원회, 법원 등에 **외부에 발송한 공문은 총 35,120건**임.

- (부서별) 공시·조사·회계·보험조사 관련 부서 11,823건, 소비자보호처·서민금융지원 부서 11,452건, 감독부서 7,331건, 검사부서 3,668건 순
- (유형별) 감독·검사·조사 관련 자료요청 및 결과통보 19,238건, 민원·정보공개 회신 11,706건, 금융위 등 유관기관 송부 3,310건, 기타 서무 관련 648건 順
- '15. 7. 1 현재 금감원이 등록한 행정지도는 총 45건

■ 금감원의 공문 중 민원회신 및 감독·검사상 자료제출·결과통보가 대부분임(88.1%).

- **금융회사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이 대부분**임.

4) 금융감독원 자료 참조.

■ 그러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규행위 해소 촉구, 법규안내, 단순 협조요청 등 **금감원의 모든 공문을 행정지도로 받아들이는 인식**의 차이가 존재

- 금융회사 입장에서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행정지도 등을 규제로 인식 (소위 그림자 규제)

■ '14년 7월, 금융당국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지도 개선을 추진함.

- 공식 등록 행정지도 외 행정지도는 무효임을 수차 공표

■ 그러나 금융현장에서는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지 않았음.

- 금융권 종사자·전문가 대상 외부 설문기관 서베이('15. 7. 2)에서 약 78%가 비공식 행정지도가 존재한다고 대답함.

■ 비공식 행정지도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.

- 행정지도 등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 우려
- 과거 금리, 수수료 등 시장영역에 대한 관여
-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내부교육 또는 제도화 미흡
- 감독행위를 보완하는 모범기준 등을 금융회사는 사전에 개입하는 행정지도로 체감

2. 현행 규정체계

가. 행정지도 운영규칙

■ 금융회사의 **건전성 제고,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** 등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지도의 원칙,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
■ 행정지도의 정의, 원칙, 방식,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, 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, 등록 및 공개, 존속기간 및 사후관리, 재검토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■ 주요내용

- **행정지도는** 관련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**최소한에 그쳐야 함** (제3조 ①항).
  -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.
  - 행정지도 시 그 취지·내용·존속기간·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을 알려야 하며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함.
-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**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**(제3조 ①항).

■ **규정 미준수 시의 조치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**임.

나.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

■ "행정규제기본법"에 의거 금융위원회 **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**을 높이고 **책임성을 확보**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**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**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■ **위원회의 구성,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이 주요내용**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, 유사행정규제 신설·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등을 심의함(제4조 ①항).

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을 뿐 **행정규제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규정**임.

다.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

■ 금융감독기관*이 감독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**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**

*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기타 위탁기관

■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, 문서 등에 의한 정책 집행,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도 선진화, 금융규제 정비 상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■ 주요내용

- 금융감독기관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금융기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**(3조 ①항).

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**선언적 역할**에 그칠 뿐만 아니라 **기획재정부를 규제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키기 곤란**

3. 운영규정 취지 및 체계

가. 제정 취지 및 경과

■ **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**되도록 금융위, 금감원, 산업은행, 예금보험공사, 기타 금융기관이 규제·감독 시 지켜야 할 **원칙과 절차를 규정할 목적**

-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
- 국무총리 **훈령으로 시행**
  -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임.

■ 이를 위하여 **현행 금융규제·감독 관련 규정을 재정비**

- **행정지도 운영규칙**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전체가 반영되어 제정 시 **폐지**
- 자체규제심사위 규정 및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 규정은 존치 계획
  - 타 정부부처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존치 결정

나. 훈령 체계[5)]

■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5개 장(章), 24개 조문으로 구성

● 총칙

– 금융규제, 금융행정지도, 감독행정작용 등을 정의

[금융규제]

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.

[금융행정지도]

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.

[감독행정작용]

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– 이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

5) 금융위 보도자료(2016. 1. 8) 참조.

- 명시적 규제
  - 금융규제 신설·강화 시 반드시 사전검토해야 하는 원칙 제시
  - 명시적 규제의 원칙과 절차는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수 권고사항으로 규정
- 행정지도/감독행정
  - 금융위·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내용적·절차적 요건 제시
- 상시개선체계
  - 이 훈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